#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09 발의연월일: 2023. 3. 16.

발 의 자:이양수・박덕흠・홍문표

윤창현 · 김성원 · 양금희

김선교 · 박대수 · 김용판

정경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방법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일부 비어업인은 불법으로 변형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와 어업인과의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또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등에 대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어업인과 비어업인에 대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해양례저인간의 상생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수산물 포획·채취 제한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제한되는 기간, 체장·체중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어업인의 처벌 규정과 같이 현행 과태료 처분 규정을 벌칙을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같은 조제2항 신설, 제65조제1항제2호 등).

법률 제 호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을 "(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을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기준을 위반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

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우반 또는 진열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혂 행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 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산업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 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 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개 정 안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 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 법」 제2조제12호--------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 획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그 시 · 도의 조 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 <신 설>

-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략)
  - 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 획ㆍ채취한 자
  - 3. 4. 삭 제 5. ~ 10. (생략)
-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2. (생략) <신 설>

-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 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 운반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 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 는 아니 된다.

- 1. (현행과 같음)
-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 2.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
  - 5. ~ 10.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u>한 수산자원을 판</u> 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 장 · 운반 또는 진열한 자

- 3. ~ 5.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 <삭 제> 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 2. (생략)
- ③ (생 략)

3	$\sim$	5	(혂행과	간으)
O.	, •	υ.	(47 %)	イロー

(2) -----

-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